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⁴
B29C 43/02

(11) 공개번호 특 1988-0006022
(43) 공개일자 1988년07월21일

(21) 출원번호	특 1987-0012884
(22) 출원일자	1987년 11월 16일
(30) 우선권주장	CH, 4' 628/86-3 1986년 11월 19일 스위스(CH)
(71) 출원인	북한-구이어르 아게 마쉬넨화브릭 베르너 훈너
(72) 발명자	스위스연방국 씨에취-8166 니이더베닝엔 에릭히 슈네벨거
(74) 대리인	스위스연방국 씨에취-8165 오버베닝엔 슈루프비아이슈트라쎄 27 김태원

심사청구 : 없음

(54) 합성수지로부터 형부품의 제조를 위한 방법과 이 방법의 실시를 위한 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합성수지로부터 형부품의 제조를 위한 방법과 이 방법의 실시를 위한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합성수지 가공기계의 합성수지 성분 배합설비 사이에 배열된 장입설비의 등각 투시도임.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합성수지 재료가 합성수지 성분 배합후에 형 작업공구의 개방된 형요부에 이송되며, 프레스되는, 합성수지로부터 형부품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접속되는 프레스 과정을 위하여 마련된 한 평탄면위에 합성수지 재료는 미리 정해진 배열방법으로 펼쳐 놓여져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의한 방법의 실시를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구동할수가 있으며 형요부쪽으로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떨어질수 있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의 움직임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장입장소로부터 형요부위까지 뻗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2항 및 제3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 및 제3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적어도 근사적으로 수평인 축주위를 선회할수 있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6

제2항 및 제3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하나의 수직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7

제2항 및 제3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벨트(5)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벨트(5)는 무한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9

제8항 혹은 제9항에 있어서, 벨트(5)는 둘러 주위를 돌아가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0

제2항 내지 제9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의 구동- 및 이송- 또는 후진속도는 상기 평탄면의 합성수지 재료의 펴쳐 놓음 순서와 형요부에서의 그것 사이의 편의에 의존하여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1

제2항 내지 제9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의 구동- 및 이송- 또는 후진속도는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2항 내지 제11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냉각할 수 있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3

제2항 내지 제12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의 운동방향에 횡방향으로 하나의 인발장치가 배열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4

제2항 내지 제13항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평탄면은 저울로서 형성되거나 또는 그러한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